

구 분	번 호
문 서 NO.	
FILE NO.	

공 사 시 방 서

사 업 명 : 서울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
기 계 설 비 철 거 공 사

Rev.0	2005. 05.	시공용	이재서	연창근	장원복
개정번호	일자	내 용	작 성	검 토	승인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철거공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사항

1.1 공사 개요

1.1.1 공 사 명 :서울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철거공사)

1.1.2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1.1.3 건물개요

1. 건물명 : 서울유스호스텔
2. 층 수 : 지상 7층, 지하 1층
3. 연면적(평) : 9,194.67㎡ (6,483.27㎡ 대수선 부분)

1.2 정의 및 기준

1.2.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철거공사)에 한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기계설비편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 도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에서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산출서 및 관련서류 등으로 한다.
5.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법규 및 기준

1.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에 따른다.
2.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 하여야 한다.

1.2.3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감독원의 정의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을 하며 공사 감리원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다음의 “감독원”으로 명기된 부분은 “감독원 및 감리원”으로 명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 이라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 대행자로서 건설 기술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의 업무

공사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2) 공사 시공에 대한 검사
- 3)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6) 시설물 철거시 반출 물량 확인

6. 시공자 (계약자 또는 수급자)

- 1) 본 지방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경력서를 포함한 모든 인원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및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 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설비시공 기술자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
 - 2)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 및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3)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4)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분야별 전담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 6)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8. 하수급자
-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3) 관련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3.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 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3.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3.4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3.5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원의 지시서
2. 설계도면, 도급계약서
3. 표준시방서

1.5 시공자의 비용부담

1.5.1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 중에서, 안전성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관계관공서, 공사관련 제회사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4. 지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5.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현장 사진
6.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7. 기타 본 공사 시공 및 관리의 제반사항 등
8. 기반시설물에 도시가스 및 수도에 대해서 관공서와 공사 관련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

1.5.2 사고발생

1.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대·소를 불문하고 감독원에게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1.5.3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생품의 처리.

1.5.4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검사시 착공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인허가 사항

1.6.1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건축주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2 착공 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공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 수첩사본
4. 현장 대리인 사용인감계
5.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 자격수첩사본
6. 예정 공정표
7. 품질관리 계획 (품질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8.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9. 인원동원 계획

10. 당 공사 규정에 의한 착공서류
11. 도급 내역서
12. 시공계획서
13.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1.7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 1.7.1 계획변경이 있을 때
- 1.7.2 현지여건이 실지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1.7.3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1.7.4 기타 감독원 및 감리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 1.7.5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때

1.8 특기 사항

- 1.8.1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공정표를 소정의 건축주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1.8.2 천재지변, 재난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사유는 건축주의 승인에 한함.
- 1.8.3 공사중지 :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관련공사로 인해 공사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공사중지 :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로 인해 공사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9 기타 사항

1.9.1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 일일
2.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 일일
3. 장비 기기 동원현황 : 일일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과 진행조치 결과사항

1.9.2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3 시공자는 수행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 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9.4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5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진도가 부진하여 준공기일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9.6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 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1.9.7 공사제한조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관청의 건축공사 제한조치가 있는 기간에 한 하여는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경우에 추가 비용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1.9.8 타공사와의 협조

시공자는 건축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축설비공사등 관련공사 시행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및 인접건물 신축공사 현장 공사 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이의신청 사항은 수급자가 책임진다.

1.10 공사현장 관리

1.10.1 안전관리

1.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일정인원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주요 안전조치 사항은 시간별로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퇴근전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3.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4.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관계법에 정한 이상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 및 안전장구등을 착용하며, 기타 필요 한개소에 안전관리표시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와 지출내역서를 매월마다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8. 일상 및 관계법상 안전관리 사항은 업무일지로 작성하며 주간, 월간, 분기별로 서면 보고 한다.

2. 시 공

2.1 일반 사항

- 2.1.1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후 30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노무동원계획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2.1.2 시공자는 공사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1.3 시공자는 공사 시공시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설계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시공을 한다.

제 2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1) 기계설비 장비, 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2) 기존 소방방재본부 지하1층에서 지상 7층 바닥을 포함한 부분 철거공사에 적용하며 그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1.1.2 주요내용

- (1) 철거 및 해체공사

1.2 용어의 정의

이 절은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事も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시공 계획

3.1.1 현장조사

-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2 시공계획서

-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해체공법은 해체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해체 시공

3.2.1 일반사항

이 절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3.3.3 해체 및 철거

-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도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3 공해 및 안전대책

3.3.1 공해대책

-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3.2 안전대책

-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5) 건물의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4 해체재 처분

-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반출을 위한 해체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5)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6)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8)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5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3.6 가설물 철거

-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3.7 복원작업

-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 한 후 원상복구한다.